

인천지방법원 2023. 12. 5 선고 2022가단284710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신용보증기금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산
담당변호사 성창재, 이진성

피 고 A
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재
변 론 종 결 2023. 11. 7.
판 결 선 고 2023. 12. 5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192,527,823원 및 그중 192,527,546원에 대하여 2021. 10. 28.부터 2022. 12. 2.까지는 연 8%,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위적 청구 : B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2021. 3. 15. 체결된 영업양수도계약을 192,527,823원의

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192,527,82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예비적 청구 : 주문 제1항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B 주식회사(이하 ‘이 사건 회사’라 한다)는 2016. 3. 30. 설립되었다. C은 2017. 6. 22.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가 2019. 3. 30. 퇴임하였고, 2019. 12. 31. 다시 사내이사에 취임하였다. C의 배우자인 피고는 2017. 6. 22.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취임하였다.

나. 원고는 2018. 4.경 및 2020. 4.경 이 사건 회사와 신용보증약정(이하 ‘이 사건 신용보증약정’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다. 이후 이 사건 회사는 주식회사 D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각각 대출을 받았다가, 2021. 6.경 해당 대출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.

다. 원고는 2021. 10. 28.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이 사건 회사를 대위하여 주식회사 D에 대출원리금 93,161,020원(같은 날 이 사건 회사로부터 621,700원을 회수하였다)을,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원리금 100,632,876원(같은 날 644,650원을 회수하였다)을 각 변제하였다(위 대위변제 당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의 지연손해금률은 연 8%인데, 위와 같이 회수한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위 621,700원의 경우 136원, 위 644,650원의 경우 141원이다).

라. 피고는 2021. 3. 15.경 ‘E’이라는 상호의 업체(이하 ‘이 사건 업체’라 한다)를 설립하여 검역 대행 및 통관 관리 등의 사업을 영위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6, 8, 9호증(가지번호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채무초과상태에서 영업 일체를 피고에게 양도하였다. 이 사건 회사의 위 영업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, 피고와 사이에 체결된 영업양수도계약의 취소를 구한다. 피고는 이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데, 양도된 영업을 이 사건 회사에 회복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고 한편 양도된 영업의 가치는 피보전채권액을 상회하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반환으로 피보전채권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 예비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여 기존과 같이 영업을 함으로써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부담하므로,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잔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(위 각 청구의 원인이 양립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나, 원고가 구하는 순서에 따라 판단하기로 한다).

나. 판단

1) 영업양도 여부

앞서 본 사실과 갑 제7, 10 내지 13호증, 을 제1, 2, 6 내지 9호증을 포함한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, 피고는 2021. 3.경 이 사건 회사로부터 영업의 주요 부분을 양수하였다고 판단된다.

- ① 피고는 ‘이 사건 업체를 설립하여 통관, 검역 등의 업무를 주로 한 반면,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C은 위 회사에서 화장품컨설팅 및 유통 등의 업무를 맡는 등 피고와 C의 주된 업무분야가 다르다’고 주장한다. 한편으로 피고는 ‘관세사 사무소 등에서 근무하던 중 퇴사하여 2011. 1.경 F라는 상호로 개인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2. 8.경 위 업체에서 C과 동업하였다. C은 2015. 12.경 F의 상호를 E로 변경하여 대표자로 등록하였으며, 2016. 3.경 같은 상호의 법인인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다.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감사로 재직하며 통관, 검역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’라고 주장한다.
- ② 피고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, 피고는 개인사업체인 F나 E 혹은 이 사건 회사를 통해 통관 및 검역 등 관련 사업을 지속하였고, 이 사건 업체를 설립한 후에도 이 사건 회사의 주요 사업부문 중 하나인

통관 및 검역 업무 등을 동일한 상호 하에 계속 영위하였다. 피고가 이 사건 업체를 설립한 시점을 전후하여 이 사건 회사와 피고의 계좌 간 이 사건 회사의 통관 업무와 관련한 비용 등이 수수된 것도 위와 같은 사정을 뒷받침한다.

③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할 때 이 사건 회사의 2019년도 매출 거래처들 중 피고가 이 사건 업체를 설립한 2021년에 위 업체가 매출을 발생시킨 거래업체와 일치하는 수는 절반 가량으로 그 비율이 낮지 않다. 더욱이 피고 스스로도 인정하는 것과 같이 이 사건 업체의 경우 주식회사 G 및 H와의 거래가 2021년도 전체 매출 중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, 위 각 업체는 이 사건 회사의 경우에도 2019년도의 주요 거래처로 전체 매출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 바 있다. 따라서 영업양도 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자료 중 하나인 거래처의 동일성 유무와 관련하여서도,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업체는 전체 매출액 중 다수를 차지하는 거래처가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. 피고가 2011년경 F라는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며 주식회사 G 및 H와 거래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, 이후 위 각 업체와의 거래가 이 사건 회사에서도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, 영업양도 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.

④ 피고가 이 사건 업체를 설립하면서 사업 소재지로 등록한 주소는 이 사건 회사의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와 일치하지 않으나, 이 사건 업체의 소재지는 부부인 C과 피고가 함께 동거하는 주소지이므로,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업체에 대하여 등록된 각 소재지의 외형상 차이는 영업양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요소가 되지 못한다.

⑤ 피고는 ‘이 사건 업체에는 종업원을 두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인적 조직을 일체로 양수했다고 볼 수 없다’는 취지로 주장한다. 그러나 이 사건 업체에 대한 신용조사보고서(갑 제6호증)에 이 사건 업체의 종업원 수가 0명으로 기재되었다는 것만으로 실제 이 사건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. 그렇지 않더라도,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서 회사의 통관 및 검역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핵심 인력인 피고가 이 사건 업체를 통해 해당 사업을 그대로 영위하였다면, 이 사건 업체에서 피고를 보조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 다른 종업원의 존재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영업양도 사실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.

2)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 부분

영업양도 후 종래의 영업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하면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채무자에게 회복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,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보전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포함된 일체로서의 영업의 가액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(대법원 2015. 12. 10. 선고 2013다84162 판결 참조).

원고는 '피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21. 2.경부터 같은 해 4.경까지 합계 55,379,474원을 송금받았고, 이 사건 회사로부터 총 매출액 238,925,874원에 달하는 거래처들을 넘겨받았으므로,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피보전채권액 상당의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'고 주장한다. 그러나 갑 제7, 12,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에게 양도된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의 가액이 위 피보전채권액을 상회하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해당 영업의 가액을 특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.

따라서 이 사건 회사가 피고에게 앞서 본营业을 양도한 것이 원고와의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, 가액배상의 범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.

3) 상호속용자에 대한 변제 청구 부분

이 사건 회사로부터 통관 및 검역 등 주요營業을 양수한 이 사건 업체는 그 상호가 앞서와 같이 'E'로 이 사건 회사와 동일하다. C이 E 명의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같은 상호인 이 사건 회사로 법인 전환을 하였고, 그 후 피고가 다시 이 사건 업체를 설립하여 위 회사의 주요營業을 양수한 일련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, 원고가 금융기관이라는 점 및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업체는 법인격 유무의 차이가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, 채권자인 원고의 입장에서 동일한 상호인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업체로營業이 이전되는 과정에서營業주체의 변동을 쉽게 판명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.

따라서 이 사건 회사의營業을 양수한 피고는 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회사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.

피고는 '원고로서는 이 사건 회사 및 이 사건 업체가 외관상 동일하다고 오인하거나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신의칙 또는 공평의 원칙상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'고 주장하나,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아닌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이 사건 회사의 구상금지급 채무의 변제 책임이

문제되는 이 사건에서는 공평의 원칙 등을 이유로 한 책임제한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.

다. 소결

피고는 원고에게 192,527,823원[= (93,161,020원 - 621,700원 + 136원) + (100,632,876원 - 644,650원 + 141원)] 및 그중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변제한 192,527,546원[= (93,161,020원 - 621,700원) + (100,632,876원 - 644,650원)]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1. 10. 28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2. 12. 2.까지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연 8%,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성준규